

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뀝니다!

시행 시기

-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2020. 1. 16.부터 시행
-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 : 2021. 1. 16.부터 시행
-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규정 : 2021. 1. 1.부터 시행



자세한 내용 >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> 정보공개 > 법령정보 > 최근 제·개정 법령 > 「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」 검색

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



법의 보호대상 확대

- 근로자 + "노무를 제공하는 자"
(특수형태근로종사자, 배달종사자 등)



MSDS 제출(노동부) 및 비공개 정보 심사

- MSDS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 비공개 시 (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), 대체명칭과 함유량으로 기재



노동자 작업중지권 명확화

-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및 대피 가능 (불리한 처우 금지)

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합니다



원청의 책임범위 확대

-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·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·관리하는 장소로 확대



유해·위험작업 도급 금지

- △도급작업, △수은, 납, 카드뮴의 제련, 주입, 가공 및 가열작업, △허가대상물질의 제조, 사용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



발주자 및 도급인의 의무 신설

-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계획·설계·시공 단계별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
- 건설공사도급인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이 설치·해체·작동되는 경우 안전·보건조치 실시

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됩니다



노동자 사망 시 형량 가중

- 5년 내에 2회 이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시 형의 1/2까지 가중
- 노동자 사망 시 법인의 처벌 강화 (10억원 이하의 벌금)



원청의 안전·보건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

- 안전·보건조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노동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


수강명령 제도 도입

- 노동자의 사망으로 유죄 선고 시 200시간 내의 수강명령 병과 가능